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동절(5.1.) 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6.4.9.)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한편,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대체공휴일 적용 추진

3. 주요내용

가. 노동절(5.1.) 공휴일 지정 및 대체공휴일 적용(제2조 및 제3조)

나.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부칙)

※ 노동절 관련 「공휴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재입법예고(4월 4주 예정)

* 노동절(5.1.) 공휴일 지정 관련(제2조) 등 규정 입법예고 완료('26.4.10~4.17.)

대통령령 제 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5월 1일 (노동절)

제3조 제1항 제1호 중 “제2조제2호·제6호”를 “제2조제2호·제6호·제6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호·제6호”를 “제4호·제6호·제6호의2”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 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제2조(공휴일)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 신 설 ></u>	6의2. <u>5월 1일 (노동절)</u>
7. ~ 11. (생략)	7. ~ 11. (현행과 같음)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제3조(대체공휴일) (현행과 같음) 1. 제2조제2호·제6호·<u>제6호의2</u>·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u>제6호의2</u>·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복무과	
연 락 처	(044) 201 - 8521